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75
----------	-------

발의연월일 : 2022. 7. 15.

발의자 : 이명수 · 金炳旭 · 김상훈

유경준 · 유상범 · 윤재옥

이주환 · 임병현 · 조명희

태영호 · 홍문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재난발생 직후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 간호사(코로나 사태), 전기기술자(대규모 정전) 등 초기대응자(First Responder) 그룹은 전문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대학 등의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재난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Emergency Manager)는 그 역할이 다양하고 영향력이 큼에도 재난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중앙과 지방은 물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부서 직원들이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순환보직에 의해 채워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전문가 양성의 시급성과 함께 교육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격증은 이러한 선순환 고리를

연결시켜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뉴노멀시대에 재난관리 분야가 전문직업군으로 자리 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함(안 제75조의2제1항).
- 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 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안 제75조의3 신설).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 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함(안 제75조의4 신설).
- 라. 재난관리사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안 제79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재난관리사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⑤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제7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합격자 연수,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⑩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재난관리사자격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4(재난관리사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에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사의 배치의 이행 실태를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8조의2제2항 중 “제78조제3항”을 “제75조의3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단체 및 제78조제3항”으로 한다.

제79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나 빌린 자

6의3. 제75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③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
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
분하여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관리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⑤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
격을 무효로 하고,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
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
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제7항에 따라 금
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합격자
연수,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⑩ 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

<p><u><신 설></u></p> <p>제78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생 략) ② <u>제78조제3항</u>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u>험과목, 시험방법, 재난관리사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75조의4(재난관리사의 배치 등)</u></p> <p>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에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사의 배치의 이행 실태를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p> <p>제78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75조의3제9항</u>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단체 및 제78조제3항----- ----- ----- -----</p>
--	---

<p>제79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7. (생 략)</p>	<p>-----.</p> <p>제79조(별 칙) -----</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u>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u></p> <p><u>6의3. 제75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u></p> <p>7. (현행과 같음)</p>
---	--